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초 「수산업법」 해당 조문 및 세부내용을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

나. 어구실명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자가 어구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다. 행정처분 감경 시기 명확화 규정(안 별표)

-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라.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 세부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보고의무 현실화

마. 행정처분 절차 개선 등(안 제6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 행정처분대장 별지서식 변경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8 ~ 8. 07.)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24시간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반사건 발생보고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를 “「수산업법」 제104조에 따라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보고해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대장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표 I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표 Ⅱ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2.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3.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4.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5.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6.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7.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8.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9.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제34조 제6호			

를 위반하거나 제27조제5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12.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경고	취소
1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취소	-
14.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경고	취소
1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제4호	경고	취소	-
1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4조 제5호	경고	취소	-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4조 제1호	취소	-	-
18. 제37조에 위반하여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9. 어촌계 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 등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0.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39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2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2.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23.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시기가 끝	제34조	경고	경고	취소

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24. 제66조에 따른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5. 제66조제2항에 따른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6.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별표 II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2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보호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고	취소	—	—	—	—
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고	취소	—	—	—	—
4.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	—	—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	제50조	경고	취소	—	—	—	—

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1항 제52조 제1항						
6.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추가	취소	—	정지 30일 추가	정지 30일 추가	—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가.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50조 제1항	취소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취소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취소	—	—	—	—	—
9.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10.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11.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12. 제40조를 위반하여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3. 제40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취소	—	정지 30일	취소	—
14. 제40조를 위반하여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5.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 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한 경우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 라.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취소	—	—	—	—	—
18.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	—	—
19.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계발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0.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제48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제7항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증명서 회수	-	-	-
2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22.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50조 제1항	경고	취소	-	-	-	-
2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가. 정지요청을 한 경우 나. 취소요청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24.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2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5.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2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6. 제54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2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7. 제54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52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28.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	제50조 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지를 위반한 경우		20일	30일	40일	20일	30일	40일
29.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30.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3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33.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대형·소형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5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5.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6.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0조 제1항	취소	—	—	취소	—	—
37.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니한 경우							
38. 제66조에 따른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39. 제66조에 따른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40.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제67조제2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41.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42.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업 등 행정처분대장

(앞쪽)

명령 서 번호	처 분 의 일	적발사항																															
		위반 자 일	전년 일	발 관 적기	위(검 거)장 소	위도			경도			어업 (어획물 운반양 식업) 종류1	어업 (어획물 운반양 식업) 종류2	어 선 번호	선 명	톤 수 (t)	어업 (어획물 운반양 식업) 번호1	어업 (어획물 운반양 식업) 번호1	면허(허가받은자 또는 신고한자)				위 반 용	위 반 사 항 (법조항)	조	의	항	호	압수 구	압수 물	조치 사항		
						도	분	초	도	분	초								성명	생 월 일	주소	연락 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청통일자 문지자	의제기 건축한	청일 문자	행정처분사항											집행자	사건 번호	구분	특별감면 특기/기록일시	특별감면 특기/기록내용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비고
			처분 일자	처분 내용	위반 (경고 차수)	시작 일	종료 일	처분 (일수)	과태 료(원)	과징금 (원)	지분 전환 현황	집행 기관 1	집행 기관 2						대상 자	해기사 면허 번호	처분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반사건 발생보고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지체 없이 ----- ----- ----- ----- ----- ----- -----

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 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 ③ (생략)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록·관리해야 ----- 「수산업법」 제104조에 따라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

----- 보고해야 하며-----

-----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대장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표 I. 일반기준 1~6. (생략) 7.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II.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표 I. 일반기준 1~6. (현행과 같음) 7.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u>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u>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II.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

현행					개정안				
별표 II. 개별기준 1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가. 수산업법					별표 II. 개별기준 1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2.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2.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3.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3.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4.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4.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5. 삭제 <2020. 8. 28.>					-				
6.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5.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7. 삭제 <2020. 8. 28.>					-				
8.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6.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9.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19조	경고	취소	-	7.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10.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19조	경고	경고	취소
11. 삭제 <2011.10.28>				
1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1조	경고	취소	-
13.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3조	경고	취소	-
14.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27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15. 삭제 <2020. 8. 28>				
16.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17.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경고	취소	-
18.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경고	경고	취소
19.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20.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3조	경고	취소	-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5조 제1호	취소	-	-

8.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				
9.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27조제5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34조 제6호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				
12.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경고	취소
1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취소	-
14.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3호	경고	경고	취소
1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제4호	경고	취소	-
1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4조 제5호	경고	취소	-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4조 제1호	취소	-	-

22.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3. 어촌계 등이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4.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25.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2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66조	경고	취소	-
27.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경고	경고	취소
28.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시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9.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시 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시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경고	경고	취소
30.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경고	경고	취소

18. 제37조에 위반하여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19. 어촌계 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 등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0.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39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2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2.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취소	-
23.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4. 제66조에 따른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시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4조 제6호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5. 제66조제2항에 따른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시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시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26.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4조 제6호	경고	경고	취소

별표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 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 면허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1. 정치망어업의 보호구 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을 위반한 경우	제29 조	정 지 20 일	정 지 30 일	정 지 40 일	정 지 10 일	정 지 15 일	정 지 20 일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을 한 자가 휴업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 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 고	취 소	-	-	-	-
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 고	취 소	-	-	-	-
4.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 업의 시작기한을 위반 한 경우	제31조 제49조 제60조	경 고	경 고	취 소	-	-	-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경영을 지배 하게 한 경우	제32조 제49조 제60조	경 고	취 소	-	-	-	-
6.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 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 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정 지 30 일 추 가	취 소	-	정 지 30 일 추 가	정 지 30 일 추 가	-

별표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 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 면허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1. 제28조에 따른 정치망 어업의 보호구역 안에 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한 경우	제33조 제1항	정 지 20 일	정 지 30 일	정 지 40 일	정 지 10 일	정 지 15 일	정 지 20 일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을 한 자가 휴업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 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 고	취 소	-	-	-	-
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 고	취 소	-	-	-	-
4.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 업의 시작기한을 위반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 고	경 고	취 소	-	-	-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경영을 지배 하게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경 고	취 소	-	-	-	-
6.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 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 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50조 제1항	정 지 30 일 추 가	취 소	-	정 지 30 일 추 가	정 지 30 일 추 가	-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가.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취 소	-	-	취 소	-	-
		정 지 30 일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정 지 30 일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8. 삭제 <2020. 8. 28.>							
9. 삭제 <2020. 8. 28.>							
10. 삭제 <2020. 8. 28.>							
11. 삭제 <2011.10.28>							
12. 삭제 <2020. 8. 28.>							
13. 삭제 <2020. 8. 28.>							
14. 삭제 <2020. 8. 28.>							
15. 삭제 <2020. 8. 28.>							
16. 삭제 <2020. 8. 28.>							
17. 삭제 <2020. 8. 28.>							
18. 삭제 <2020. 8. 28.>							
19. 삭제 <2020. 8. 28.>							
20. 삭제 <2020. 8. 28.>							
21. 삭제 <2020. 8. 28.>							
22. 삭제 <2020. 8. 28.>							
23. 삭제 <2020. 8. 28.>							
2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35조 제1호 제49조 제60조	취 소	-	-	-	-	-
25.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26.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업, 동해구외 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	제41조 제57조	취 소	-	-	취 소	-	-
		정 지 90	취 소	-	정 지 90	취 소	-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가.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50조 제1항	취 소	-	-	취 소	-	-
		정 지 30 일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정 지 30 일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							
-							
-							
-							
-							
-							
-							
-							
-							
-							
-							
-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취 소	-	-	-	-	-
9.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10.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업, 동해구외 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취 소	-	-	취 소	-	-
		정 지 90	취 소	-	정 지 90	취 소	-

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일		일		
27.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60일	정지 90일	취소
28.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9.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64조	정지 30일	취소	-	정지 30일	취소 -
30.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1.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2. 삭제 <2020. 8. 28.>						
33. 삭제 <2020. 8. 28.>						
34. 혼획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 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제41조의3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 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일		일		
11. 제4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여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12. 제40조를 위반하여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13. 제40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취소	-	정지 30일	취소 -
14. 제40조를 위반하여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15.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16.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 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 산동물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한 경 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 산동물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한 경 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 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 한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 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 한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라. 혼획으로 포획·채취 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 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라. 혼획으로 포획·채취 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 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 조제1 항	취 소	-	-	-	-	-	17. 제44조에 따른 어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취 소	-	-	-	-	-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 의 폐기 등의 조 치결과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정 지	정 지	취 소	정 지	정 지	취 소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 의 폐기 등의 조 치결과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정 지	정 지	취 소	정 지	정 지	취 소
나. 동경 128도 이동수 역에서 조업한 경우 (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60 일	90 일		60 일	90 일		나. 동경 128도 이동수 역에서 조업한 경우 (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60 일	90 일		60 일	90 일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 건을 위반한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 건을 위반한 경우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정 지
		20 일	30 일	40 일	20 일	30 일	40 일			20 일	30 일	40 일	20 일	30 일	40 일
36.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경 고	10 일	15 일	-	-	-	18.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경 고	정 지	정 지	-	-	-
											10 일	15 일			
37.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 계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44조	30 일	45 일	60 일	-	-	-	19.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50조 제1항	정 지	정 지	정 지	-	-	-
										30 일	45 일	60 일			
38.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정 지	정 지	신 고	-	-	-	20.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제48조제6항을 위반하 여 신고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제7항	정 지	정 지	신 고	-	-	-
		10 일	20 일	증 명 서 회 수						10 일	20 일	증 명 서 회 수			
39. 어업의 변경허가 등 을 받지 아니하고 조 업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 제16조)	제48 조							21. 제49조제1항을 위반 하여 어업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수산 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0조 제1항						

46.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8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47.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39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8.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2호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6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90일
49. 삭제 <2020. 8. 18.>							
50. 외국과의 어업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5호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51.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 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2.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 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53.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대형·소형 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 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7. 제54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52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28.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9.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6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90일
-							
30.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3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33.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대형·소형 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4.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5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 64조의2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5.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제 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	취소	-	-	취소	-	-
57.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58.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9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59.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69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60.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70조 제2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61.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2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3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5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제50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5.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6.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0조 제1항	취소	-	-	취소	-	-
37.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38. 제66조에 따른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39. 제66조에 따른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40.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제67조제2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41.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62.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2.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